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647 주민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4. 18.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개별 과세처분은 위 목록의 연번에 따라 이 사건 제O 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동 435를 본점으로 하여 기계설비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 1. '내역'란 기재와 같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거나 미신고된 사실 및 주민세가 미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6. 6. 17. 합계 5,491,290원의 취득세 및 주민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2.에, [redacted]시장에게 주민세(재산분) 부과 예정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부동산 등의 취득세에 대하여 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6. 8.경 불채택결정을 하여 2016. 8.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redacted]도지사는 2016. 8. 24. 불채택결정을 하여 같은 달 29.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최초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위 세무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이 사건 제1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각 과세적부심사결정 이후인 2016. 9. 7.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6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내지 6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436 외 9필지 3,60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지출한 저당권설정 비용, 감정평가 비용, 수수료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부분이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명확한 주장 없이 이 사건 제2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3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천막 임시 막사인데, 원고의 계정별 원장(시설장치)에 2011. 11. 30.자로 기재된 거래대금 3,000만 원은 천막 교체비용에 해당할 뿐 위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이 아니므로, 위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비용이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3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제4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3. 29. [redacted]자동차 주식회사(이하 '[redacted]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한 화물차(A,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은 15,990,909원이고,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109만 원은 회계를 대행한 세무사가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109만 원이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4 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제5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전동지게차는 등록대상 장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처분은 위법하다.

6) 이 사건 제6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이 소규모 사업장이 관계로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주민세 납부의무를 홍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5년 동안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56,58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위 취득세 등 납부 당시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장부계정	적 요	거래처	차인과표(원)
건물	등기	법무사 B	1,130,000
지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한국감정원수원	1,532,000
지급수수료	부동산 중개	C	11,280,000
지급수수료	법무등기부대비용	법무사 B	557,000
지급수수료	은행비용설정	법무사 B	2,548,027
지급수수료	근저당설정부대비용	D 법무사사무소	278,000
지급수수료	법무수수료	D 법무사사무소	951,500
건물	지적공사	E	9,206,36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 제3호,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은 원고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토지)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에 지출된 위 표 기재 각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감정, 지적측량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수수료이거나 절차비용(특히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을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절차비용에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3,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3.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435, 436, 436-7 각 지상에 건축한 각 공장건물에 대하여 합계 과세표준 281,999,999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의 계정별 원장(건물)에는 2011. 7. 1.부터 2011.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축용역비 등 명목으로 각 건물 건축에 지출한 비용이 295,720,000원인 사실, 피고는 위 비용과 원고가 위 각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13,720,001원이 누락신고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정별 원장(건물)에 기재된 비용이 위 각 공장건물에 관한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3, 을 제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5. 피고에게 연면적 250㎡인 강파이프 구조의 가설건축물(창고)을 축조한다는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실, 피고는 2012. 1. 27. 위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 과세표준액인 1,245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의 계정별 원장(시설장치)에는 원고가 2011. 11. 30. 창고천막 및 판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3,000만 원과 종래 취득세 부과처분에서의 과세표준액인 1,245만 원의 차액인 1,755만 원이 누락신고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제3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은 위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천막이 3년마다 교체되어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위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처분은 적법하고, 위 3,000만 원이 위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4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3, 갑 제12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9. 기아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다음날 취득세 과세표준을 15,990,909원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계정별원장(차량운반구)에 2012. 3. 29. '봉고 1.2톤 1대'에 대한 비용으로 기아자동차에 15,990,909원 및 10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위 109만 원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취득가액의 누락신고액으로 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제4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신빙성 있는 법인장부인 원고의 계정별원장(차량운반구)에 기재된 15,990,909원과 109만 원의 합계액인 17,080,909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4 처분은 적법하고, 위 109만 원이 이 사건 차량 취득을 위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갑 제12호증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1,599,091원으로서 그 금액도 다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5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영상,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8. [redacted] 주식회사로부터 TR15S 지게차 1대를 485만 원에 매수한 사실, 위 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가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지게차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취득가격에 구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에 대한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5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1] 제4호에 의하면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는 등록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5 처분은 적법하고, 위 지게차가 등록대상인 기계장비가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물건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6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위 지방세법 규정은 현재까지도 동일하다)에 의하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인 화성시 안석리 435 지상 공장 건물(715㎡) 및 같은 리 436 지상 공장 건물(378㎡)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제6 처분[공장건물 1개 당 4년 (2012년 ~ 2015년) 동안의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여 합계 8건 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1,622,900원이 과세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6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의무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민세(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 측 세무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주민세(재산분)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을 미리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6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판사 곽태현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별지 1.

목록

연번	세 목	내 역	과세처분일	고지된 세액	비고
1	취득세 (부동산)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436번지외 9필지 토지 3602㎡ 건물686.72㎡ 매매 과표 과소신고	2016.08.04.	취득세 1,939,510원 지방교육세 109,930원 농특세 54,960원 합계 2,219,420원	
2	취득세 (부동산)	건물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435번지 건물 465.75㎡ 신축 취득 과표 과소신고	2016.09.07.	취득세 660,250원 지방교육세 35,520원 농특세 47,150원 합계 742,920원	
3	취득세 (부동산)	건물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435번지 가설건물취득 과표 과소 신고분	2016.09.07.	취득세 598,100원 농특세 59,810원 합계 657,910원	
4	취득세 (차량)	[redacted] 봉고 차량 취득세 과소 신고	2016.09.07.	취득세 90,900원	
5	취득세 (기계장비)	미등록 전동지게차 취득 미신고	2016.09.07.	취득세 159,460원 농특세 14,000원 합계 173,460원	
6	주민세 (재산분)	2012~2015년 경기분 미신고 ([redacted]리 435번지, [redacted]리 436번지 : 총 8건)	2016.09.07.	주민세 1,622,9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별지 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0

한다.

4. 부가가치세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4. 지게차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끝.